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9. 26 선고 2022가단5239394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피고B

변론 종결2023. 8. 22.

판결 선고2023. 9.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피고의 배우자)은 2006. 11. 1. 서울 광진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원고에게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5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나. 원고는 2010. 12. 1. 이 사건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청구금액 354,911,741원,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카단10912).

다. 원고는 피고와 F을 상대로 2011. 6. 13. 별지 신청원인으로 별지 신청취지와 같은 지급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차46817, 이하 '선행 지급명령'), 선행 지급명령은 2011. 6. 20. C에게 송달되었고, 피고에 대하여 2011. 7. 5. 확정되었다.

라. 2012. 1.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서울동부지방법원 G)되었고 2012. 12. 10. 위 경매절차에서 매각이 이루어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마. F은 2018. 7. 17. 서울회생법원에 2018하단102069호로 파산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 참가하였다. 위 파산절차는 2018. 12. 19. 폐지로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4,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요지

가. 원고는 F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하였고(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제1, 2 대출), 피고는 아래 표 근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대출금채무를 근보증하였다(이하 아래 순번에 따라 '제1, 2 보증').

1	2007.2.13.	가계일반자금대출	50,000,000	60,000,000	2011.4.13.	연15%
2	2007.2.13.	가계일반자금대출	320,000,000	480,000,000	2011.4.13.	연15%

나. 원고는 피고와 F을 상대로 제1, 2 대출원리금 및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명하는 선행 지급명령을 받았고 선행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다. 2022. 6. 13. 현재 남은 대출원리금은 아래 표와 같다.

원금	30,000,000	296,610,230
지연손해금	53,543,109	536,798,256
소계	83,543,109	833,408,486
합계	916,951,595	

라.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제1 보증금 한도 내인 6,000만 원, 제2 보증금 한도 내인 4억 8,000만 원 합계 5억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① 선행 지급명령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점(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② 이자수입/원금상환예정조회(갑2-1, 2)는 원고의 내부 전산자료에 불과한 점, ③ 근보증서(갑6)는 보증한도액이 제1, 2 보증한도액과 일치하지 않고, 가계대출추가약정서(갑7)는 대출만기일이 제1, 2 대출만기일과 일치하지 않는 점(참고자료로 제출한 대출신청서는 기재된 대출금 액수가 제1 대출금과 동일하고 피고의 서명도 있으나, 계약 체결일과 보증한도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을 고려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과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가 제1, 2 대출원리금 채무를 보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노한동

별지